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공정거래법

2010. 12. 1.

5개 메추리 부회장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사단법인 한국메추리협회의 사업자 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2010카조2673, 2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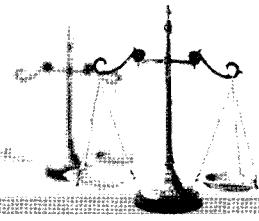
▶ 위반내용

4개 부회장 대표들은 2009년 3월 말경 유선 통화 등을 이용하여 유추 가격을 2009년 6월 1일부터 22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하자고 합의한 사실이 있다. 상기 합의 내용은 4개 부회장 모두가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5개 메추리 부회장 중 용궁농장의 경우 상기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2009년 6월 중순부터 2009년 1월 중순까지 4개 부회장 대표 및 메추리 협회 협회장 문○○은 천안에 위치한 '태하농원', '신토불이' 등 식당에서 수차례 모임을 가진 후 최종적으로 2010년 2월 9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날인하고 같은 날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1009-11 법조타운빌딩(2층)에 소재한 공증인이 남부종합 법무법인에서 상기 합의서를 공증한 사실이 있다. 한편, 용궁농장 대표 김○○은 상기 2010년 2월 9일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2010년 2월 23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합의서를 메추리 협회와 작성 및 날인하고 공증한 사실이 있다. 다만, 피沁인 5개 메추리 부회장 및 메추리협회는 2010년 6월 24일 자진하여 상기 '합의서'를 파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 합의의 실행시기와 관련하여 메추리협회와 5개 부회장 간 합의서에는 "16. 2010년 5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적어도 2010년 3월 30일 이전부터 실행되었음이 인정된다.

법 제19조의 '합의' 한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용궁농장을 제외한 피沁인 4개 메추리 부회장이 유추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에 해당되며, 이는 위의 행위사실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 피沁인 5개 메추리 부회장이 메추리협회와 2010년 2월 9일, 2010년 2월 23일 작성 및 공증하여 메추리협회를 통해서만 유추를 농장에 분양하고, 신규농장에는 유추를 분양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위의 행위사실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

피沁인 4개 메추리 부회장은 전국 메추리 분양 시장에서 약 70%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업자들로써 유추 분양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경쟁으로 인한 자신들의 이익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써 메추리 유추 분양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메추리 생산농장은 통상적으로 자기와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메추리 부회장을 이용하거나 생산시설 등이 양호한 메추리 부회장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양질의 메추리 유추를 공급받아 이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힘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沁인 5개 메추리 부회장이 메추리협회를 통해서만 유추를 농장에 분양하고, 신규농장에는 유추를 분양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는 메추리 유추 분양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피沁인 5개 메추리 부회장은 위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沁인 4개 메추리 부회장의 위의 행위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5개 메추리 부회장의 위의 행위는 "거래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서 그 합의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메추리협회는 2010. 2. 26.에 구성사업자인 메추리 농장에게 <농장주 어려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여, 24구 기준 16,000원, 11구 기준 18,000원 이하로 판매하는 농장 및 덤픽 판매하는 농장에 대해 신고를 종용하면서 이들에 대해 불이익 부여할 것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10년 2월 22일 캡슐 제조 사업자인 ○○○(○○산업 대표, 이하 “○○산업”이라 한다)과 메추리협회를 통해서만 캡슐을 주문받아 공급하고 메추리 농장으로부터는 주문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추리 부화장과 “메추리협회를 통해서만 유주를 주문받아 공급하고 메추리 농장으로부터는 주문 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심인은 2010년 2월 26일, 2010년 3월 10일, 2010년 4월 10일 메추리 농장에 발송한 공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추리 농장이 유주 및 캡슐 주문시 자신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5개 부화장 및 성신산업이 아닌 다른 메추리 부화장 및 캡슐 제조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이 메추리알의 판매 기준가격과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고 고지한 행위는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메추리 농장이 판매가격 결정할 때, 피심인이 통보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거나 적어도 이를 고려하여 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이 유주 및 캡슐 주문시 자신을 통하여 5개 메추리 부화장 및 ○○산업만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유주 및 캡슐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등 불이익을 고지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인 메추리 농장이 유주 및 캡슐 주문시 피심인이 통보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거나 적어도 이를 고려하여 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메추리 농장은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시장의 수급 상황이나 각자의 영업여건,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메추리 알 판매 가격, 메추리 부화장 및 캡슐 제조사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 전국적 메추리 농장의 약 50% 이상이 피심인의 회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메추리알의 판매 기준가격과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고 고지한 행위는 구성사업자간 가격경쟁이 감소 또는 소멸됨으로써 메추리 알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메추리 부화장 및 캡슐 제조사 선택에 제한을 하고 이를 어겼을 시 공급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고지하는 행위는 구성사업자인 일반 메추리 농장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제한한 행위로서 메추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위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심인 용궁농장을 제외한 4개 메추리 부화장의 위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용궁농장을 포함한 5개 메추리 부화장의 위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메추리협회의 위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각각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 박○○, 이○○, 김○○, 김○○은 메추리 유주 분양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메추리 분양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 박○○, 이○○, 김○○, 김○○은 사단법인 한국메추리협회를 통해서만 유주를 농장에 분양하고, 신규 농장에는 유주를 분양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메추리 분양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 사단법인 한국메추리협회는 메추리알의 판매 기준가격을 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메추리 알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 사단법인 한국메추리협회는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유주 및 캡슐 주문시 자신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특정 메추리 부화장 및 캡슐제조사가 아닌 다른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메추리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2011. 2. 22.

현대자동차(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2010제감2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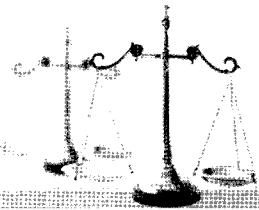
▶ 재산정이유

피심인은 2004년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는 집중적으로, 노조 반대 등을 이유로 들어 독립 사업자인 판매 대리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점이전 및 인원채용을 제한하는 한편 과도한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강제하였다.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심인은 2000년부터 2004년 말까지는 대리점이 거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 피심인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고 판매계약서에 규정하였다가, 이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인 2005년 1월경 대리점은 피심인과 사전협의를 거쳐 거점을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 조항을 변경하였다. 피심인은 위 계약조항에 근거하여 경주·남부 대리점계리점 등 9개 대리점의 거점이전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였다. 둘째, 피심인은 대리점이 판매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피심인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2000년 5월 22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174개 대리점의 등록에 대한 심사를 지연 또는 거부하였다. 셋째, 피심인은 2000년 5월 경부터 2006년 4월경까지 대리점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목표를 결정하고 대리점은 판매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약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대리점의 판매목표를 정하였고, 2006년 4월경에는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대리점계약의 내용조차 변경하였다. 피심인은 대리점에 대한 일방적 신출고 및 관리비용 전가, 판매실적 부진시 재계약 거부 등 방법을 통해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요하였다.

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07년 5월 18일 전원회의 의결 제2007-28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피심인의 거점·판매 대리점에 대한 수명사실 통지명령(이하 “통지명령”이라 한다) 및 과징금 납부명령(21,581백만 원)을 의결하였다.

원심결 당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위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피심인과 대리점과의 거래대상인 승용차 및 5톤 이하 화물차가 대리점을 통해 판매된 부분을 관련 상품으로, 위반행위가 집중된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위반기간으로 하여 관련매출액을 11,989,949,27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이 사건 위반행위가 대리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초과이윤의 획득이나 소비자이익의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봉쇄를 통한 경쟁제한의 우려가 비교적 약한 점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 0.3%를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35,969,84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단계에서는 조정사유가 없어 기본과징금을 그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하였고,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단계에서는 피심인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에 해당되어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20% 감경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28,775,87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부과과징금 산정 단계에서는 피심인이 발생시킨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및 자동차 판매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피심인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부당 이득 환수, 법위반 방지 또는 제재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판단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25% 감경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21,581,000,000원(백만 원 미만 절사)으로 결정하였다.

피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원심결의 시정명령·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각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거점이전 및 인원채용 제한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원



회가 원심결에서 확인한 174개 대리점 외에 2개 대리점에 대한 인원채용 제한행위를 추가로 확인·인정하였으나, 판매 목표 강제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과징금의 경우 구체적 법위반사실과 관련이 있는 개별 대리점들에 대한 매출액 및 위반기간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판매목표 강제행위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통지명령과 전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각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7누16051 판결).

한편 위 고등법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원고의 직영판매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중에서도 특히 사업 활동 방해를 받은 개별 대리점과 경쟁관계에 있어 그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인근 직영판매점의 매출액 및 위반기간을 개별로 따져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사업 활동 방해를 받은 대리점의 인근 직영판매점 별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 합산하되, 관련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일부 인원채용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례의 원칙을 감안하여 관련매출액이 정확히 산정되는 직영판매점들의 관련매출액 평균을 관련매출액으로 추산한다.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위반행위 또는 거점이전제한 및 인원채용제한 등 두 개의 위반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 또는 두 개의 정액과 징금 부과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결 취지는 각 사업 활동 방해별로 인근 직영판매점의 관련매출액을 따져 합산하라는 것이므로 설사 피심인 주장에 따라 이 사건 행위를 하나 또는 두 개의 위반행위로 보더라도 관련매출액은 개별 사업 활동 방해별로 산정하여 합산하게 되며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을 감안하여 관련매출액이 정확히 산정되는 인원채용제한 부분의 평균 관련매출액을 관련매출액 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는 인원채용제한 부분의 각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할 것이므로 관련매출액 합산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이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심인의 위반행위 중 관련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은 9개 대리점에 대한 거점이전제한 관련 82,185,460,000원 및 12개 대리점에 대한 인원채용제한 관련 51,769,207,000원이다. 한편 관련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164개 대리점의 경우, 관련매출액이 정확히 산정되는 대리점들의 개별적 인원채용제한 부분의 평균 관련매출액 4,314,100,000원($51,769,207,000 \text{원} \div 12\text{건}$)을 164개 대리점의 인원채용제한 부분의 관련매출액으로 추산하면 707,512,400,000원($4,314,100,000\text{원} \times 164\text{건}$)인바, 결국 이 사건 위반행위의 총 관련매출액은 841,467,067,000원($82,185,460,000\text{원} + 51,769,207,000\text{원} + 707,512,400,000\text{원}$)이다.

위의 관련매출액에 원심결과 동일하게 부과기준율 0.3%를 적용하면 기본과징금은 2,524,401,000원($841,467,067,000\text{원} \times 0.3\%$)이고, 의무적 조정과징금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같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임의적 조정과징금 감경 20%를 적용하면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2,019,520,000원($2,524,401,000\text{원} - (2,524,401,000\text{원} \times 20\%)$)이다. 부과과징금 결정 과정에서는 원심결과 달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원심결에서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25%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하였으나, 과징금 재산정 결과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과과징금은 2,019,000,000원(1백만 원 미만 절사)이다.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의결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은 과징금 2,019,000,000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01 의신청

2011. 1. 19.

(주)대한항공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주)대한항공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2010소심2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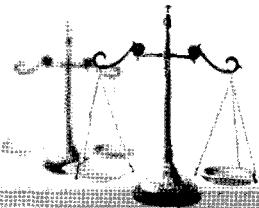
▶ 조치이유

이의신청인은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여객운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첫째, 2006~2009년 중 이의신청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여행사가 경쟁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성수기에 이의신청인의 항공권 공급을 제한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여행사로 하여금 저가항공사 등 경쟁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이들 경쟁 항공사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둘째,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일정 비율 이상을 이의신청인의 항공권으로 구매하여야 리베이트(Volume Incentive, 이하 "V/I"라 한다)를 지급하거나 전체 구매량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V/I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행사로 하여금 저가 항공사 등 경쟁 항공사의 항공권 대신 이의신청인의 항공권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들 경쟁 항공사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첫째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위 둘째 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0. 8. 31. 전원회의 의결 제2010-108호).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V/I 제공행위의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첫째,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이 사건 V/I 제공행위의 관련시장(이하에서는 "이 사건 관련시장"이라고 한다)을 '국내발착 국제선 항공여객운송시장'으로 확정하였으나, 예컨대 인천~오사카 노선의 가격이 10%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인천~뉴욕 노선으로 구매를 전환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 사건 관련시장은 '각 노선별 운송시장'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원심결의 시장점유율 추정방식이 비합리적이다. 즉, 원심결은 각 항공사별 평균 운임의 상대적 비율에 수송점유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시장점유율을 추정하면서, 항공사별 평균운임 산정시 이의신청인과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이하 "아시아나"라고 한다) 간에는 국제선 전체의 1인당 평균운임을 비교하고 아시아나와 기타 항공사 간에는 주요 개별노선의 가격표상 단순운임을 비교함으로써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의신청인은 아시아나에 비해 운임이 비싼 장거리 노선을 많이 취항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셋째, 수송점유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의신청인의 점유율은 40% 이하이고, 이의신청인과 아시아나의 수송점유율을 합산하더라도 63% 이하이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인하는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첫째, 이 사건 관련시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각 노선별 운송시장'이 아닌 '국내발착 국제여객항공권 여행사판매서비스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시장이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하는 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는, 거래의 객체로 볼 때는 국제여객항공권 판매서비스이고 거래의 단계로 볼 때는 항공사와 여행사간에 국제여객항공권 판매서비스를 매매하는 단계이며 거래의 지역으로 볼 때는 국내시장이다. 이상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장은 '국내발착 국제여객항공권 여행사판매서비스시장'이다. '국내발착 국제여객항공권 여행사판매서비스시장'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국제선 항공여객운송 항공권 중 80% 이상의 물량이 판매되는 규모의 시장(2009년 시장규모 : 약 4조 3천억 원)으로서, 여행사가 자기의 책임으로 항공사를 대신하여 항공사의 운송서비스를 여행객에게 홍보하고 여행객이 적당한 항공운송서비스를 선택하도록 도우며 항공권 발권 및 대금 수령 업무까지에 이르는 서비스를 항공사에 제공하는 시장이며, 그 성격상 각 노선별 국제선 항공여객운송시장과는 별개의 시장이다. '국내발착 국제여객항공권 여행사판매サービ-



'스시장'에서 항공사들은 여행사에 대한 자사의 항공권 총매출액 또는 매출 점유율을 증대하기 위해 경쟁한다. 이 시장에서 이의신청인도 이 사건 V/I 제공행위를 통하여 여행사에 대한 자사의 항공권 총매출액 또는 매출 점유율을 증대하기 위해 경쟁하였다. 원심결이 관련시장을 '국내발착 국제선 항공여객운송시장'으로 확정한 것은 이 사건 V/I 제공행위가 여행사들의 이의신청인 항공권 총매출액 또는 매출 점유율에 대한 영향을 통해 각 노선별 국제선 항공여객운송시장의 항공사간 경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나, 이 사건 V/I 제공행위와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와 그 분야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영향이 미치는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 사건 V/I 제공행위는 여행사에 대한 항공권 총매출액 또는 매출 점유율을 증대하기 위한 경쟁관계에서 이루어졌으며 특정 노선에서의 경쟁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국내발착 국제여객항공권 여행사판매서비스시장에서 성립된 경쟁관계로 인한 영향이 각 노선별 국제선 항공여객운송시장에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노선별 국제선 항공여객운송시장'은 이 사건 관련시장으로 보기 어렵다. 원심결도 이 사건 관련시장을 '국내발착 국제선 항공여객운송시장'으로 설시하면서 과징금 산정 단계에서는 이의신청인이 여행사와 거래한 국내발착 국제노선의 항공권 매출액만을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국내발착 국제여객항공권 여행사판매서비스시장'을 이 사건 관련시장으로 상정하고 있다. 둘째,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발착 국제여객항공권 여행사판매서비스시장에서 이의신청인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된다. 법 제2조(정의) 제7호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우선 시장점유율을 볼 때 국내발착 국제여객항공권 여행사판매서비스시장에서 이의신청인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42.8%, 2009년 43.4%로서 아시아나(2008년 20.3%, 2009년 20.5%), 일본항공(2008년 3.9%, 2009년 3.8%) 등 2, 3위 경쟁 항공사와 비교하여 현격한 우위에 있다. 그 밖에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의 가능성 등에 대한 원심결 설시 내용에 의하면 이의신청인이 단독으로 국제여객항공권 여행사판매서비스의 가격·수량 등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에 있음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시장을 '각 노선별 운송시장'으로 보아야 하며 시장점유율 추정 방식이 비합리적이며 수송점유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할 때 원심결에서의 이 사건 관련시장은 국내발착 국제여객항공권 여행사판매서비스시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심결 주문 2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V/I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서 첫째, 이의신청인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할 의도·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대응하여 시장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한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한다. 둘째, V/I 제공 조건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지 않은 점, V/I를 받기 위한 조건이 V/I 여행사의 평균 K/S와 유사 수준인 점, 일정 K/S 달성을(예 : 75%) V/I 지급률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점, 아시아나 등 경쟁사의 시장점유율이 25%에 미달하므로 K/S 단계 상승에 따른 V/I 지급률 증가의 의미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V/I 제공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셋째,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V/I 제공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의신청인의 시장점유율은 V/I 시행 이후 하향추세이다. 다만 2009년에는 K/S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로 외국항공사들이 한국노선 운항을 중단·감축하였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인은 위원회가 이 사건 V/I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이후 2010년 1월~2월 동안 V/I 시행을 보류한 적이 있는데, 동 기간의 K/S와 수송점유율은 41.7% 및 39.7%로서 V/I가 시행된 2009년 1~2월의 41.4% 및 38.8%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의신청인의 수송점유율은 2004년 이후 대체로 하향추세이다.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인의 V/I 대상 여행사는 총 200개로 국내 여행사의 수(2008년 말 현재 일반여행업 700여 개, BSP 여행사 850여 개)에 비해 많지 않고, 그 중 상당수는 경쟁 항공사들의 V/I를 함께 적용받고 있으며, 항공권 매출규모 2위인 '탑항공'과 같이 항공권 매출규모가 크면서 이의신청인 V/I가 적용되지 않는 여행사들도 존재할 뿐 아니라, 인터넷 판매, 본·지점 판매 등 다양한 유통수단을 동원하여 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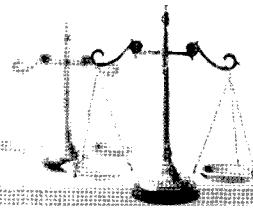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권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경쟁항공사들도 이의신청인과 유사하게 V/I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인의 행위만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이유는 대부분 원심결 당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이의신청인의 내부문건 등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V/I 제공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 즉, 이의신청인의 V/I가 단순한 마케팅 차원이 아니라 저가항공사 등 경쟁사업자가 시장을 침식하는 것을 막아 이 사건 관련시장에서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사실이 '제주항공 대응 전략' 등 다수의 문건에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이 사건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V/I 구조는 V/I 수령을 위한 조건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K/S 달성을 요구하고 K/S에 연계하여 V/I를 삭감·추가하거나 일정 수준을 구매하면 전체 구매량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의신청인의 장점에 의한 경쟁 혹은 단순한 마케팅 차원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여행사의 충성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여행사로 하여금 다른 항공사와 거래를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이 명백하다. 최고 V/I 지급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K/S가 평균수준을 현저히 상회해야 한다. 경쟁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셋째,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V/I 제공행위로 인해 실제로 경쟁사업자 배제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의신청인의 시장점유율은 2004년~2009년 기간 동안 50.4%~52.4%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의신청인의 주장대로 V/I가 시행되던 2009년 1월~2월의 K/S보다 V/I가 시행되지 않았던 2010년 1월~2월의 K/S가 오히려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K/S 변동 폭이 0.3%로 미미하고 그것이 단기간 V/I를 보류한데 따른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의신청인의 수송 점유율은 2004년 39.4%, 2007년 36.5%, 2009년 39.8%로서 하향 추세로 보기 어렵다. 여행사를 통한 간접판매가 국내 항공권 판매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여행사가 대부분 이의신청인과 V/I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의신청인의 오랜 독과점 지위로 인해 여행사들이 이의신청인의 영업정책에 따르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다른 항공사의 대체 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넷째, 다른 항공사들이 이의신청인과 유사한 V/I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V/I 제공행위의 위법성 여부 판단과 관련이 없다.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V/I 제공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처분(9,837백만 원)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의신청인의 V/I 제공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업계관행이라는 점, 경쟁 사업들의 V/I로 인한 수요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마케팅 차원이라는 점, 경쟁사업자 배제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2008년 V/I 여행사를 확대한 이유는 항공권 발매수수료 폐지를 앞두고 중소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이의신청인의 단독 취항노선, 다른 항공사들과의 경쟁이 치열하거나 이의신청인이 경쟁 열위에 있는 노선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위반행위의 영향을 받은 상품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셋째,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각 20% 및 10%의 감경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이유는 대부분 원심결 당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이 사건 관련시장은 전형적인 독과점시장이고 이의신청인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점, 경쟁을 회피하고 독점이윤을 유지·강화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V/I 제공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임이 명확하다. 단순한 마케팅 차원의 행위라거나 경쟁사업자 배제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은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시장은 국내발착 국제여객항공권 여행사판매서비스시장이므로 이의신청인의 단독 취항노선 등에서의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조사 협조에 대하여는 원심결에서 이미 10%의 과징금 감경을 인정하였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따른 감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과징금 감경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의신청인의 적자 규모가 2008년 1조 9천억 원, 2009년 980억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원심결 당시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부과징금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즉, 원심결(2010. 8. 31.) 당시 부과과징금 감경 사유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이 개정



(2010. 5. 14. 대통령령 22160호)된 후 그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과정금고시가 개정(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되기 이전이어서 이의신청인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단계에서만 20%를 감경하고 부과과징금은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된 과정금고시에 따르면 이의신청인의 과도한 적자상황은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 고려대상에서는 제외되고 다만,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50% 초과 감경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심결시 이 사건 V/I 제공행위와 관련된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에서 2년 연속 적자를 이유로 의무적 조정 과정금의 20%를 감경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만 위 20% 감경을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감안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70%를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원심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V/I 제공행위 관련 과정금을 다시 산정하면, 기본과징금은 14,054백만 원으로 원심결 금액과 동일하나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조사협조 10%만 적용하여 12,648백만 원(14,054백만 원 - (14,054백만 원 × 0.1))으로, 부과과징금은 3,794백만 원(12,648백만 원 - (12,648백만 원 × 0.7))으로 각 산정된다. 여기에 법정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이미 확정된 경쟁 사업자 사업 활동 방해행위 관련 과징금 560백만 원을 더하면 최종 과징금은 4,354백만 원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련시장이 국내발착 국제여객항공권 여행사판매서비스시장임을 명확히 하고, 원심결 과징금은 이를 4,354백만 원으로 변경하며, 나머지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결한다.

▶ 조치내용

원심결 주문 2를 변경하고, 주문 3의 과징금을 4,354,000,000원으로 변경한다.

2011. 2. 7.

(주)씨엔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2010소심3431)

▶ 조치이유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씨엔커뮤니케이션(이하 “이의신청인 씨엔컴”이라 한다)은 2006년 1월 9일부터 2008년 3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총 4회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중개의 방법으로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합계액 9,152백만 원의 91.76%에 해당하는 8,398백만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여, 법정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인 100분의 35를 현저히 초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및 제20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인들에 대한 고발 및 이의신청인 씨엔컴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4. 제3소회의 의결 제2010-12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법 제50조 제3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시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인들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0년 11월 19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년 1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적법하지만, 다만 고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기간 준수 여부 혹은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이의신청인들은 원심결 중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의신청인 씨엔컴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은 되어 있으나 소속판매원 중 이의신청인 씨엔컴이 공급하는 제품을 구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매한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어서 실질적인 다단계판매조작을 갖춘 다단계판매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2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둘째, 설사 이의신청인 씨엔컴을 다단계판매업자로 보더라도 이의신청인 씨엔컴과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씨엔엠브이엔오는 통신사와의 계약을 위하여 형식상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경영자, 주주, 사무실 등이 같은 동일한 법인이므로 결합재무제표상의 매출을 기준으로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법정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첫째, 이의신청인 씨엔컴이 공급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일부라도 그 판매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원 요건에 해당된다면 이의신청인 씨엔컴은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이의신청인들도 원심결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이의신청인 씨엔컴이 다단계판매업자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둘째,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 씨엔컴과 주식회사 씨엔엠브이엔오는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회사의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사의 구성은 물론 회사의 목적도 다르다는 점에서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법 제20조 제3항 제4호에는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가격합계액을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 중 고발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시정조치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결한다.

▶ 조치내용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 중 고발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시정조치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아도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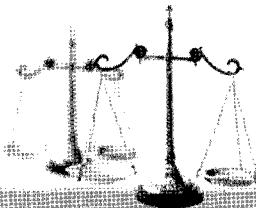
2010. 11. 1

(주)디엠케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9부사2897)

▶ 위반내용

피심인은 2007년 11월 21일 수급사업자인 ○○마크(주)에게 선박건조용 자재인 철판에 표시하는 '마킹시스템' (Marking System)의 기계장비를 제조 위탁하여 2008년 8월 25일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을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초과하였음에도 일부 하도급대금 63,837,22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하도급대금 28,460,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171,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의 선박건조용 자재인 철판에 표시하는 '마킹시스템'의 기계장비를 제조 위탁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63,837,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28,460,000원을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6,171,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피상인은 이지마크(주)가 납품한 '마킹시스템'의 기계장비 설치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발주자가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마크(주)(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가 하자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시운전 포함)를 하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첫째, 2008년 7월 2일 ○○마크 마킹시스템 장비의 '설치확인서'에는 수급사업자, 발주자, 피상인(원사업자)의 담당 직원이 각각 서명 날인하여 마킹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설치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둘째, 피상인이 2008년 8월 28일 수급사업자로부터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그 후 2009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하도급대금 잔액 중 일부 대금(28,46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의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면 당연히 피상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점, 끝으로 피상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의 잔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피상인과 발주자 사이에 체결된 '전처리 시스템' 장비설치공사의 도급계약과 관련된 전체 설치공사가 납기 내에 완료되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부담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납품자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상인이 이 사건의 기계장비인 마킹시스템의 하자를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상인의 위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상인은 수급사업자인 ○○마크 주식회사에게 선박간조용 '마킹시스템'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63,837,22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2008년 10월 25일부터 2009년 9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5%의 이율에 의한 이자 및 2009년 9월 15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자체 없이 지급하고,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28,46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 6,171,770원을 자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약관법

2011. 1. 6

변호사 권○○ 등 15개 사업자의 위임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 시정권고의유

약관조항 제3조 [소송비용]에서 "(2)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본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비용은 소가 및 소송의 결과(승패소)를 불문하고 모두 균등하게 분담하는 것으로 하며"라는 조항은 무효이다.

당해 계약서를 통해 피상인들은 위임인들을 사업장 별로 묶어서 공동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공동소송의 형태는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의 청구가 각기 별개 독립의 것이고 단지 편의상 하나의 소송절차에 의하는 것이 비람직하여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병합된 통상공동소송의 형태이다. 통상공동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소송의 결과 및 소가 등에 따라 위임인마다 다르게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우리나라 법원은 소송비용에 관한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공동소송인이 균등하게 분담한다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공동소송인간에 실제 발생하는 소송비용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약관조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임인들이 소송비용을 모두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합의와 실체법에 의한 해결 자체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해 사안에서 소송의 승패나 위임인의 근무기간·근무형태에 따라 위임인마다 소송비용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당해 약관조항은 피임인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위임인(다른 위임인에 비해 소가가 적거나 패소한 위임인 등)으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임인들 간에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피임인은 당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노동조합원 총회에서 당해 약관조항과 같은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대해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위임계약에 반영한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원 총회에서의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피임인과 위임인간에 위임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개별적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타인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사항은 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그러므로 소송비용을 소가 및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위임인간에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한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시정권고사항

피임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 약관 중 제3조 제2항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011. 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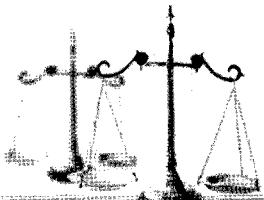
권○○ 등 15개 사업자의 위임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 시정권고이유

약관조항 제3조 [소송비용]에서 소가 및 승패를 불문하고 소송비용을 위임인들 간에 균등 분담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소송비용은 소송의 결과 및 소가 등에 따라 위임인마다 다르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당해 사안과 같이 통상공동소송을 위한 소송위임계약서에서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별로 소가 및 소송의 결과 등에 따라 소송비용도 별도로 책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해당 약관조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임인들이 소송비용을 모두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위임인들 간의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피임인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위임인(다른 위임인에 비해 소가가 적은 위임인 등)으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위임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그러므로 소송비용을 소가 및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위임인간에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한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약관조항 제4조 [성공보수 등]에서 피임인의 노력 투입 후 위임인의 일방적 해지 등의 사유 발생시 위임인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은 무효이다.

당해 약관조항은 위임사무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으나 피임인이 이미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경우를 대비하여 둔 조항으로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성공보수는 위임인이 본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와 금 50만원 중 더액의 금액인데 반해, 당해 약관조항에서 정한 위약금은 금 500만 원이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은 피임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금차액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임금차액인 약 1억 원(위임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의 3%인 약 300만 원(1억 원 × 3%)정도이다. 그렇다면 피임인이 많은



노력을 투여하여 승소하였을 경우에 받는 이익(약 300만 원)보다 승소하지 않고 중간에 당해 약관조항에서 정한 사유로 위임계약이 종결된 경우에 받는 이익(500만 원)이 더 많을 수 있다. 즉, 피상인은 당해 약관조항을 통해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통상 당해 약관조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성공보수간주 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인데, 위와 같이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 면이 있다. 더군다나 위 사유 중 '갑(위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위임계약의 상호해지자유의 원칙에 반할 수가 있다. 만약 피상인이 많은 노력을 투여한 후에 위임인이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별도의 손해배상규정이나 성공보수 간주 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손해 발생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위약금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상인이 많은 노력을 투입한 후 위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에 위약금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서 약관법 제8조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약관조항 제5조 [위임계약의 해지]에서 위임인이 공동소송인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소송외의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 위임인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은 무효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제5조 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상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임인에게 2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해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위임계약은 위약금 부담 없이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당해 약관조항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피상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임인에게 2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임계약에서 보장되는 상호 해지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피상인이 이미 투여한 성과에 대한 보수는 성공보수 간주규정에 따라 받으면 되고, 제1호의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므로 당해 약관조항과 같이 일괄적인 위약금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기타 공송소송인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소송 및 소송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약관조항 제5조 [위임계약의 해지]에서 위임인이 불법파견 투쟁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피상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무효이다.

위임계약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즉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은 당사자를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라도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해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고려에 기한 것이다(지원림 저, 민법강의 제7판, 1499p). 그러나 위임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곧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어떠한 내용의 해지사유이든지 규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당해 계약 목적과 관련 없는 사항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항을 약관에 위임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약관법에 위반될 수 있다. 당해 위임계약서는 근로자 지위확인과 직접 고용 의무이행,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위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므로 계약해지사유도 이러한 소송수행과 관련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5조 제2호 후문에서 '위임인이 불법파견 투쟁과 관련한 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해지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나, 불법파견투쟁과 관련된 지침의 내용은 미리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이 약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위임인은 계약체결 당시에 그 지침의 내용을 미리 예견할 수 없다. 또한 계약이행과정에서도 위임인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불법파견투쟁에 참여하는지 여부와 수임인의 위 소송수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위 약관조항에 의해 만약 위임인이 불법파견투쟁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수임인이 위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위임계약을 통하여 부당하게 위임인의 노동조합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불법파견투쟁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따를 것을 강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당 약관조항 중 제5조 제2호 후문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본 소송위임계약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사유로 위임인들로 하여금 노조활동의 참여를 강제하는 근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고객(위임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 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011. 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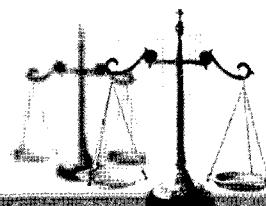
(주)실론투어의 여행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2011약관1066)

▶ 위반내용

허니문 국외여행상품(이하 "허니문상품"이라 한다)은 항공, 숙박, 이동, 관광, 안내 등으로 이루어진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사들은 자신들의 노하우, 시간, 인력 등을 투입하여 허니문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거나 대형여행사들이 개발한 허니문상품을 대행 판매하고 있다. 여행사인 피심인은 통상 여행출발일 수개월 전부터 허니문상품을 판매하며 항공좌석 및 숙박시설 예약을 위해 항공사(또는 항공권을 확보하여 판매하는 여행사) 및 현지 숙박업체 등에게 선불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때 지급하는 선불금의 크기 및 지급 시기는 허니문상품의 구성내용(숙박시설, 항공사, 항공좌석, 여행 시기)에 따라 차이가 크며 고객이 허니문상품의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사가 이러한 선불금을 항공·숙박관련 취소료로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국외여행표준약관을 허니문상품의 기본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여행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특약은 고객이 허니문상품의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기본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액이 매우 크고, 여행출발일 기준으로 보다 이른 시기에 이용계약을 취소하여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일반 국외 여행상품에 비해 고객의 허니문상품 이용계약 취소로 인해 여행사가 숙박·항공 관련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취소료, 즉 피심인의 손해가 기본약관상 고객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 규정보다 크고, 보다 이른 시기부터 발생하기 때문인 점이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은 고객의 여행계약취소로 여행사는 허니문상품 개발·판매에 들어간 유·무형의 비용, 항공·숙박관련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취소료 등의 손해가 발생하며 이러한 사업자의 손해는 허니문상품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이를 포괄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한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높은 위약금 부과 기준을 운영하면서 실제 발생한 피심인의 손해가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위약금에 비해 적은 경우 고객의 위약금을 감해주는 것이 고객의 반발을 막을 수 있고, 고객으로부터 위약금을 받는 데 편리함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허니문상품의 특성을 인정한다하더라도 피심인의 여행자 약관상 특약 제4조 및 제5조의 밑줄 친 부분은 고객의 여행계약 취소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숙박과 관련해서는 고율의 위약금을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전세기편 항공권과 관련해서는 여행개시일 기준 60일 내에는 항공료의 환불불가를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첫째, 허니문상품의 이용 가격은 2인 기준으로 통상 수백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므로 피심인이 고객의 계약취소로 인해 부담해야 할 항공·숙박관련 취소료 등에 상응하도록 위약금 부과기준을 좀 더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객의 여행계약 취소로 인해 피심인이 부담해야하는 손해, 즉 항공·숙박 관련 취소료는 허니문상품의 구성내용(숙박시설, 항공사, 항공좌석, 여행 시기)에 따라 발생 시기 및 크기가 다양하여 취소료가 항공·숙박료의 전액에 대해서 발생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숙박 시설의 경우 이용계약 취소시 숙박료를 전혀 환불받을 수 없는 상품인지, 이용계약 취소시기에 따라 취소료 부과율을 달리하고 있는 상품인지, 항공좌석의 경우 전세기편 항공권이라 하더라도 취소료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여행시



기의 경우 취소료가 큰 성수기인지 취소료가 작거나 없는 비수기인지 등에 따라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 고객이 여행 출발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더라도 여행사는 항공·숙박관련 사업자에게 취소로 여행경비의 일부만을 부담할 경우에도 고객은 여행사에게 여행경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의 계약취소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위약금이 사업자의 손해에 비해 현저히 적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위약금을 자발적으로 감액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아 고객이 위약금 과다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여 분쟁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위약금이 사업자의 실 손해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은 고객의 계약취소로 인해 항공 및 숙박관련 사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취소료를 증빙을 통해 고객에게 입증하고 이 금액과 피심인의 인건비 등의 기타 손해액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위약금을 청구함으로써 위약금 청구범위를 실 손해에 상응하게 한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여행자 약관상 특약 제4조 및 제5조의 밑줄 친 부분은 고객의 여행계약 취소시 이로 인해 피심인이 입는 실제 손해의 크기를 반영하여 위약금 청구범위를 피심인의 실 손해에 상응하게 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 손해의 크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숙박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고율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전세기편과 관련해서는 여행개시일 기준 60일 내에는 항공료를 일체 환불해주지 않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 조치내용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여행자 약관' 상 [특별약관(취소료 규정)] 제4조 (여행경비 최소 수수료 규정) 1~5번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